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공제제도의 안전망 역할 강화

오병국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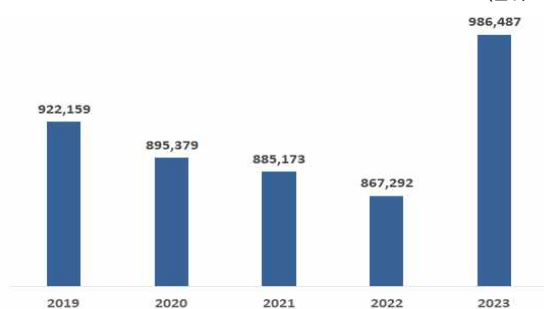
최근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됨.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폐업 및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가 부족함. 따라서 정부 및 노란우산공제는 세제지원 확대, 보험회사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sup>1)</sup> 및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 986,487명으로 전년 대비(867,292명) 13.7% 늘어남
- 폐업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4년 7월 기준 427만 3천 명으로 2023년 8월(437만 명) 이후 2.2% 적은 수준임

〈그림 1〉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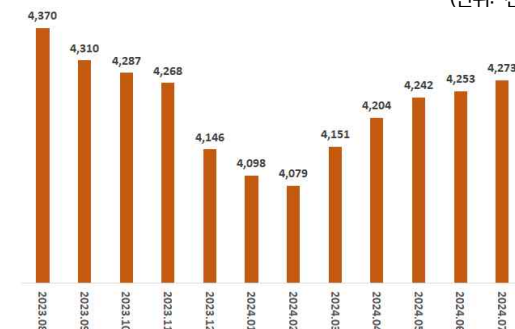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그림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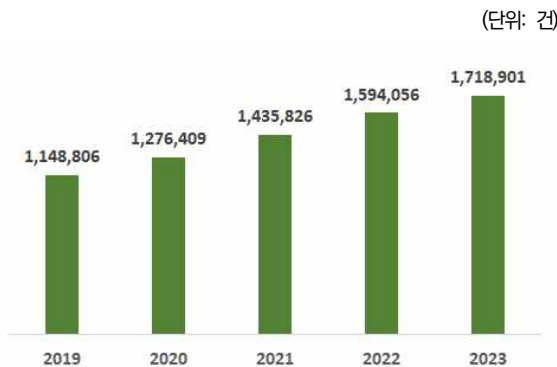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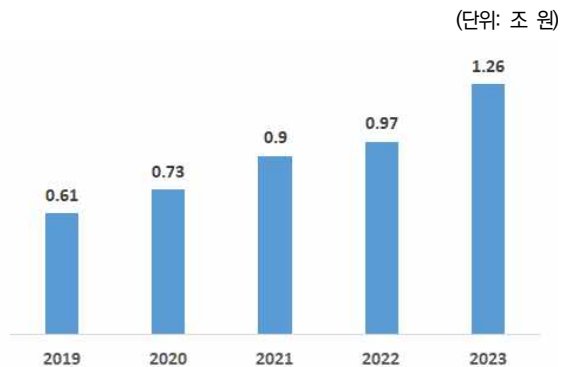
1)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거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이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함

- 정부도 2024년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sup>2)</sup>
  - 종합대책은 크게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이상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확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sup>3)</sup>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sup>4)</sup>이며, 2007년 처음 도입되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해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음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폐업·사망, 만 60세 이상 노령,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납입부금과 이에 부러진 이자를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로 간주 될 수 있음<sup>5)</sup>
- 노란우산공제는 제도 출범 이후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해 폐업공제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 수는 2019년 약 114만 건에서 2023년 약 171만 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50% 증가함
  - 폐업 사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해 2022~2023년 사이에 폐업공제금이 0.97조 원에서 1.26조 원으로 약 30% 가까이 증가함

〈그림 3〉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 수



〈그림 4〉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액



자료: 노란우산공제 경영공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yuma/management>)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7. 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7. 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3)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무이자대출 사유는 질병·상해, 재해, 파산 등이며, 납부유예 사유는 화재, 파산, 입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4) 공제제도는 가입자 간에 공동의 위험이 공유되나,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사보험으로 이해될 수 있음  
5) 공제 가입을 위한 조건은 사업체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함. 공제부금은 월납 기준 5~100만 원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음

-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짧은 기간 동안 규모가 크게 성장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대표 공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폐업 등 공제 사유에 대응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6)</sup>
  - 가입 증가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종사자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의 비중은 약 23.2%에 달함
  - 폐업공제금의 증가세는 공제 가입 증가세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종사자의 경영상 어려움 모두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망 역할이 중요히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폐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폐업 및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가 부족함을 감안할 때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 가입 및 수급 요건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며, 적립금 납입 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이 존재함
  - 2023년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폐업 및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및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해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 51.7%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5.9%, 67.9%)에 비해 각각 12.9%p, 16.2%p 낮음

〈표 1〉 평소 폐업 및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

(단위: %)

구분	폐업 위험		신체적 건강 위험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준비하지 못함	준비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4.1	55.9	32.1	6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0	43.0	48.3	51.7

주: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은 폐업 및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했으며, 1점부터 3점까지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4점부터 6점까지를 '준비함'으로 분류함

자료: 오병국·변혜원·이소양(2024),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험연구원

-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각종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의 제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공제부금 전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소규모기업 대표자의 폐업 및 퇴직 등 사유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본 소규모기업공제의 경우 월납 기준 1,000엔에서 70,000엔 사이에서 공제부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sup>7)</sup>
  - 노란우산공제는 일부 폐업 리스크, 재난,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맞춤형 보험 제공을 검토할 수 있음

6)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2024. 7. 19),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7)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小規模企業共済の掛金”